OFFICE OF Privacy Protection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환자의 권리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 건강 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 안내서

소비자 정보 자료 7

오래 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과 새로 제정된 연방 규정이 환자의 의료 기록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를 제공합니다.[1]

이것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비자 정보 자료에는 환자의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의사가 개인 건강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대부분의 의사, 병원, HMO 및 다른 건강 관리 기관들은 환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 관행 통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2]

이 통지문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통지문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 환자의 권리 및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고 전문의에게 의뢰하기 위해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용합니다. 또한, 보험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환자에 관한 정보를 사용합니다.[3]

☑ 개인 건강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을 제한할 권리

의사, 보험 회사 및 다른 건강 관리 제공자들은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환자에게 서면으로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치료, 지불, 또는 건강 관리 운용 목적이 아닌 공개는 여기에 해당됩니다.[4]

HIV 검사 결과나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5]

▪ 허가의 제공

환자의 서면 허가를 "허가서(authorization)"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대상자 및 공개의 목적을 기술해야 합니다. 날짜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어떤 종류의 압력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어 서면 허가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6]

환자들은 의사나 의료 보험 플랜에 치료, 지불, 또는 건강 관리 운용을 위해서 환자의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방법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7]

- 연락 방법

환자들은 의사나 의료 보험 플랜에 특정한 방법이나 장소로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한 통지서를 특정한 주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 대신에 집으로만 전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8]

- 고용주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

환자들은 고용주가 자신에 관한 건강 정보를 받는 것을 대부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 보험 회사 및 다른 건강 관리 제공자들은 고용주에게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환자에게 서면으로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9]

환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어떤 종류의 압력이나 보복을 받을 두려움이 없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는 사원 의료 보험 플랜의 보증인으로서 특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직무와 관련하여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 개인 건강 정보를 제공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들은 대부분의 건강 관리 제공자들에 개인 건강 정보를 제공 받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개에 대한 기록

이것을 "공개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개한 날짜,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의 이름, 공개한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환자의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치료, 지불, 또는 건강 관리 운용을 위한 공개에는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됩니다.[10]

☑ 원치 않는 신약이나 의료 서비스에 관한 우편물을 중지시킬 권리

대부분의 건강 관리 제공자들은 환자의 건강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환자에게 서면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 허가의 제공

그들이 환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허가서 양식에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환자의 건강 정보를 제약회사에 판매하여 그 회사가 환자에게 지금 복용하는 약 대신에 특정한 다른 약을 구입하도록 권유하는 편지를 보내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보험 플랜은 새로이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11]

☑ 의료 기록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청할 권리

환자들은 의료 기록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의료 보험 플랜은 환자로부터 서면 요청을 접수하면 5 근무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합니다.

환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그 환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2]

▪ 의료 기록의 복사

환자들은 의료 기록에 포함된 개인 건강 정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의료 보험 플랜은 이러한 복사에 대해 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3]

▪ 변경 요청

환자들은 의료 기록에 포함된 개인 정보가 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으면 그러한 정보의 변경을 의사나 의료 보험 플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의료 보험 플랜은 환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거부된 경우, 환자는 그러한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진술서를 파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14]

☑ 불만을 제기할 권리

대부분의 의사, 의료 보험 플랜, 병원 및 다른 건강 관리 제공자들은 환자에게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환자에게 불만을 접수할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환자들이 먼저 의사, 플랜 또는 건강 관리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환자들은 연방의 개인 건강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방 민권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15]

Office for Civil Rights, Region IX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50 United Nations Plaza, Room 322
San Francisco, CA 94102
음성 전화 (415) 437-8310
팩스 (415) 437-8329
TDD (415) 437-8311

불만을 제기할 적절한 기관을 찾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 건강 정보 보호 문제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캘리포니아 주 개인 정보 보호과 전화 (866) 785-9663으로 연락하시거나 privacy@dca.ca.gov로 전자 우편을 보내십시오.

☑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한 구제

개인 건강 정보 보호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한 몇 가지 경우에는 주법도 환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합니다.[16]

개인 건강 정보 보호에 관한 추가 지원 기관

- Health Privacy Project
  Georgetown University
  <www.healthprivacy.org>

- Privacy Rights Clearinghouse
  Fact Sheet 8A: HIPAA Basics: Medical Privacy
  www.privacyrights.org/fs/fs8a-hipaa.htm

-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ww.hhs.gov/ocr/hipaa/>

- California Office of HIPAA Implementation
  <www.ohi.ca.gov>

이 소비자 정보 자료는 캘리포니아 주 HIPAA 시행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 자료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이나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특정한 경우에 대해 조언을 받기를 원하면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 사실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복사한 원문의 의미가 변경되었거나 왜곡되지 않은 경우, (2)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보호국의 개인 정보 보호과가 제작했다는 크레디트를 표시하는 경우, (3) 모든 사본을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주

[1] 개인 건강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은 1996년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료 보험 이동 및 책임법, HIPAA),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개인 신원 확인 가능 건강 정보 기준, 45 CFR 제160부 및 164부)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Confidentiality of Medical Records Act(의료 기록 비밀 유지법, 민법 제56조 이하 참조),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Act(환자 의료 기록 열람법, 건강 안전법 제123110조 이하 참조),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Act(보험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법, 보험법 제791조 이하 참조) 및 Information Practices Act(민법 제1798조 이하 참조)를 포함하는 개인 건강 정보에 관한 몇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특정한 권리와 관련된 법률들이 아래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참조된 모든 법률은 개인 정보 보호과의 웹사이트 < www.privacy.ca.gov/laws.htm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HIPAA는 개인 건강 정보를 전자식으로 전송하는 건강 관리 제공자만을 규제합니다. 통지문은 HIPAA, 45 CFR §164.520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통지문에 관해서는 주 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98.17조를 참조하십시오.

[3] 치료, 지불 또는 건강 관리 운용을 위한 건강 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대해서는 HIPAA, 45 CFR § 164.506 및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56.10조 소항목 (c)(a)를 참조하십시오.

[4] 공개 제한에 대해서는 HIPAA, 45 CFR §164.502 및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56.10조를 참조하십시오.

[5] HIV 검사 결과에 대한 비밀 보호는 캘리포니아 주 건강 안전법 제120975-121125를 참조하십시오. 정신과 치료 기록에 대한 비밀 보호는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56.104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심리 요법 주"의 정의에 대해서는 HIPAA, 45 CFR §164.50, 1을, 그리고 심리 요법 주의 사용 및 공개에 대한 허가 요건은 45 CFR §164.508 소항목 (a)(2)를 참조하십시오.

[6] 허가에 대해서는 HIPAA, 45 CFR §164.508 및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56.11조를 참조하십시오.

[7] 치료, 지불 또는 건강 관리 운용을 위한 사용 및 공개의 제한에 대해서는 HIPAA, 45 CFR §164.522 소항목 (a)를 참조하십시오.

[8] 비밀 연락 요건에 대해서는 HIPAA, 45 CFR §164.522 소항목 (b)를 참조하십시오.

[9] 고용주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HIPAA, 45 CFR §164.512 소항목 (b)(1)(v) 및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56.20조를 참조하십시오.

[10] 공개에 대한 기록은 HIPAA 45 CFR §164.528 및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98.25조와 1798.28조를 참조하십시오.

[11]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HIPAA 45 CFR §164.508 소항목 (a)(3),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56.10조 소항목 (d), 캘리포니아 주 건강 안전법 제123148조 및 캘리포니아 주 보험법 제791.13조 소항목 (k)와 제791.05조를 참조하십시오.

[12] 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HIPAA, 45 CFR §164.524, 캘리포니아 주 건강 안전법 제123110조 소항목 (a) 및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98.32조를 참조하십시오.

[13] 기록 복사에 대해서는 HIPAA, 45 CFR §164.524, 캘리포니아 주 건강 안전법 제123110조 소항목 (b) 및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98.33조를 참조하십시오.

[14] 기록 변경에 대해서는 HIPAA, 45 CFR §164.526, 캘리포니아 주 건강 안전법 제123111조 및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98.35조를 참조하십시오.

[15] HIPAA에 의한 불만 제기에 대해서는 45 CFR §164.530 소항목 (d)를 참조하십시오. HIPAA에 의한 불만은 불만 제기자가 위반에 대해 인지했거나 그렇게 추정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민권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45 CFR §160.306).

[16] 부적절한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구제는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56.35조, 열람권 위반에 대한 구제는 캘리포니아 주 건강 안전법 제123120조, 주 기관의 위반에 대한 구제는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98.45-1798.57조를 참조하십시오.